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국방부에 두는 한시조직인 군공항 이전사업단의 존속기간을 2020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, 이에 필요한 인력을 조정(6급 1명 감축)함과 동시에 사업단 내 기능을 재편하고,

나. 국방부에 공무원직근로자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군무원정책과에 해당 기능을 명시하고, 이에 필요한 인력 4명(5급2, 6급2)을 증원하며 이 중 5급 1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,

다.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팀 단위 기구 중 국방민원상담센터의 존속기한을 2020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, 사이버대응기술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1일까지에서 2022년 5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0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제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
10. 공무직근로자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
11.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정원·예산 등의 현황관리 및 실태조사
12.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

제16조제3항 중 “1명”을 “1명) 및 공무직근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이전기획과장,”을 “이전총괄과장,”으로, “이전협력과장”을 “이전계획과장”으로, “이전기획과장은”을 “이전총괄과장은”으로, “이전협력과장”을 “이전계획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전기획과장”을 “이전총괄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의 갈등관리 및 홍보 업무 총괄
5. 군 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에 관한 협상 총괄

제20조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,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전협력과장”을 “이전계획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수원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

4.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

5.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

6. 광주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
별표 1 총계 “663”을 “66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55”를 “659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203”을 “205”로 하고, 행정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사·임업주사·보건주사·환경주사·항공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·전산주사·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“156”을 “158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총계 “664”를 “66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56”을 “660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204”를 “206”으로 하고, 행정주사·사

서주사·공업주사·임업주사·보건주사·환경주사·항공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·전산주사·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“156”을 “158”로 한다.

별표 6 사무운영서기보 1 다음에 “군공항이전사업단(존속기한: 2022년 1월 30일)”을 신설하고, “군공항이전사업단(존속기한: 2020년 1월 30일)”을 삭제하며, 총계 및 일반직 계 “16”을 각각 “15”로 하고, 행정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사·임업주사·보건주사·환경주사·항공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·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“4”를 “3”으로 한다.

국방부령 제91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“2020년 2월 28일”을 “2022년 2월 28일”로 한다.

국방부령 제92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“2020년 5월 1일”을 “2022년 5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인사복지실) ① ~ ⑨ (생략)	제10조(인사복지실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
⑩ 군무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⑩ ----- -----.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<u>민간근로자 인사제도 및 현황 관리</u>	9. <u>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제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10. <u>공무직근로자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11. <u>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정원 · 예산 등의 현황관리 및 실태조사</u>
<u><신 설></u>	12. <u>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</u>
⑪ ~ ⑲ (생략)	⑪ ~ ⑲ (현행과 같음)
제16조(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) ① · ② (생략)	제16조(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(5급 1명, 6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1명) 및 <u>공무직근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-----.</u>
제20조(군공항이전사업단) ① (생략)	제20조(군공항이전사업단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밑에 이
전기획과장, 이전사업과장 및
이전협력과장 각 1명을 두되,
이전기획과장은 부이사관·서
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이
전사업과장은 영관급장교로, 이
전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
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이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
분장한다.

1.·2. (생 략)

<신 설>

3. (생 략)

4.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
업 관련 업무 총괄

5.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
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

6. 광주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
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
관한 사항

7. (생 략)

④ 이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
분장한다.

1.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의
갈등관리 및 홍보 업무 총괄

② ----- 이
전총괄과장, -----
이전계획과장 -----
이전총괄과장은 -----

----- 이
전계획과장-----
-----.

③ 이전총괄과장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의
갈등관리 및 홍보 업무 총괄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<삭 제>

5. 군 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
대의 이전에 관한 협상 총괄

<삭 제>

6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④ -----
-----.

<삭 제>

2. · 3. (생략) 4. (생략) ⑤ <u>이전협력과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<u>군 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에 관한 협상 총괄</u> <신설>	1. · 2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 3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⑤ <u>이전계획과장</u>----- -----. <삭제> 3. <u>수원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</u>
2. · 3. (생략) <신설> <신설> <신설> ⑥ (생략)	1. · 2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 4. <u>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</u> 5. <u>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</u> 6. <u>광주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</u> ⑥ (현행과 같음)
국방부령 제91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	국방부령 제91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

구의 존속기간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방민원상담센터는 <u>2020년 2월 28일까지</u> 존속한다. ② (생략)	구의 존속기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2022년 2월 28일</u>----- --. ② (현행과 같음)
국방부령 제92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칙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 및 제4조의2제3항·제1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된 사이버대응기술팀은 <u>2020년 5월 1일까지</u> 존속한다. ② (생략)	국방부령 제92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칙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2년 5월 1일</u>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표

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국방부 공무원(군인제외) 정원표(군인제외) 정원표(제16조제1항 본문
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63</u>	<u>667</u>	+4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655</u>	<u>659</u>	+4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공업 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보건사무 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	<u>203</u>	<u>205</u>	+2
행정주사 · 사서주사 · 공업주사 · 임업주사 · 보건주사 · 환경주 사 · 항공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 안전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 주사 또는 기록연구사	<u>156</u>	<u>158</u>	+2
·	·	·	



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의2]

국방부 공무원(군인제외) 정원표(군인제외) 정원표(제16조제1항 단서
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664</u>	<u>668</u>	+4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656</u>	<u>660</u>	+4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공업 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보건사무 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	<u>204</u>	<u>206</u>	+2
행정주사 · 사서주사 · 공업주사 · 임업주사 · 보건주사 · 환경주 사 · 항공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 안전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 주사 또는 기록연구사	<u>156</u>	<u>158</u>	+2
·	·	·	



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6]

국방부 공무원(군인제외) 한시정원표(군인제외) 한시정원표(제19조제9
항 및 제20조제6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2. 군공항이전사업단(존속기한: 2020년 1월 30일)		<삭 제>	-
2. 군공항이전사업단(존속기한: 2022년 1월 30일)	<신 설>		+
총계	<u>16</u>	<u>15</u>	-1
일반직 계	<u>16</u>	<u>15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사 ·임업주사·보건주사·환경주 사·항공주사·시설주사·방재 안전주사·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	<u>4</u>	<u>3</u>	-1